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75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의자 : 신영대 · 허종식 · 윤준병
노종면 · 김교홍 · 유동수
문대림 · 문진석 · 문금주
한민수 · 서영교 · 주철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추구로 저렴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중고거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맞물리며 중고거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실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음.

한편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특례는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 일반 중고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고 시장의 실질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중고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의”로 한다.

3. 중고품: 110분의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고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u>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p>	<p><u>자동차 및 중고품의-----</u> ----- ----- -.</p>
---	--